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시행 2011.3.1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4호, 2011.3.11, 일부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제·개정 이유】

### ■개정목적

-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25호(2010.3.9)의 미비점 보완  
- 축산법과 상충되는 F1 오리의 보상기준 삭제 및 고시운용 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행정조치로 시정한 사항 등 반영하여 개정

### ■개정내용

- F1오리의 종오리 산정방법에 따른 보상기준 삭제  
- 현행 F1 오리의 종오리 보상기준단가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향후 육용오리로 보상
- 소 종축등록우 보상기준 조정(현재 시행중)  
- 젖소·육우를 제외하고 한우로 한정토록 보완
- 돼지 보상기준 등 보완(현재 시행중)  
- 새끼돼지 보상기준 세분화 및 보상금 역전현상 보완
- 젖소 보상기준 보완(현재 시행중)  
- 젖소 다산우 시가보상 방법 및 보상금 역전현상 보완
- 살처분 가축의 급격한 가격변동 시 보상기준 보완(현재 시행중)  
- 급격한 가격변동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제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 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장려금을 지급 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

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 병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축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

## 축산법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록·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옹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역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

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 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 ②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도태권고서]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 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

## 축산법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

는 별지5호 서식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칙 <제2011-24호,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 · 수평균가격 × 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80%	
젖소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의 90%	
	다산우(3~5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노산우(6산이상)	(노페우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 + [다산우(3-5산) 가격 - 노페우 가격] ÷ 2]	
젖소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 + 태아가격 [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 · 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 × 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 ÷ 10.25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초과산유량) × (농가별유대-생산비)] × 이용잔여년수의 1/2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초과산유량 × (농가별유대-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조정계수(0.99)]	상 동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 입식제한기간 × 조정계수(0.99)]	상 동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육우	육우 임신우	체중kg × 육우 비거세우의 체중 kg당 가격 + (젖소 초유떼기 가격) × 살처분 당시 개월수/10개월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 · 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 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 ÷ 14개월	
	송아지(5개월이하)	(송아지월령 + 10개월(임신기간)) ÷ 14개월 × 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 · 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 · 수 구분
	35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 [(당해 가축의 체중kg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kg당 가격]	암 · 수 구분
	350kg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350kg) + [(당해 가축의 체중kg - 350kg) × kg당 가격]	암 · 수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 산지가격(600kg) + [(당해 가축의 체중kg - 600kg) × kg당 가격]	암 · 수 구분

## 축산법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고
한우 종축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거세우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종축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	혈청검사 등으로 총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kg 기준)+[(당해체중-30kg)×(110kg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자돈가격(30kg)/80)]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농가 수취가격)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든	-후보돈 외부구입시: [중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중부전까지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중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터 중부전까지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타아 가격: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250,000원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교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개	어린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성견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 -임신타아 가격:젓먹이 강아지 가격의 1/2을 평균산지수에 일률 적용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닭	병아리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 단, 산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종계(산란용·육용·토종닭)·실용계(산란용·육용·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
	산란용 종계 -초생추~27주령 미만 -27주령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1/4×10%]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78주령이상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종계 -초생추~31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고
닭	- 31주령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0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중계 노계) 기준	
	토종닭 중계		
	- 초생추~25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5주령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	
	-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6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중계 노계) 기준		
닭	육용 실용계(재래닭 포함)		
	- 육추(500g내외)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 출하단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산란용 실용계		
	- 78주령까지 사육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중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병아리~10주령미만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 10주령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격×10%		
• 21주령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1주령~78주령미만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중 산란노계 가격		
• 78주령이상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0주령까지 사육			
• 병아리~10주령미만			
닭	• 10주령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325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또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격×10%	
	• 21주령~7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이상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중 산란노계 가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 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 축산법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고
오리	종오리(PS) - 병아리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 28주령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 78주령 이상		
오리	육용오리 - 병아리 - 병아리~41일령 - 42일령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사)한국오리협회 조사·발표가격 기준	
오리	종란 -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 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 종란을 제외한 알	병아리 가격의 1/2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을 기준	
메추리	병아리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생산비+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개×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영수증)×10%] 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7주령		
	7주령이상~62주령미만 62주령 이상 알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녹용	(사)한국양육협회 조사가격 기준  (사)한국양육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가축	산양·면양·노새·당나귀·토끼·거위·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육용오리 :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http://www.koreaduck.org))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월간한국양육(한국양육협회 발행)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등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정한다.

**【비고】**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

을 산정하여 지급

**【비고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3】** 종계·종오리 및 종란기준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나. 종오리 :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오리

다. 종란 : 종계 또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

**【비고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 + 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 × 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 ÷ 365 × 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 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 - 노폐돈 가격)

÷ 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1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1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축산법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 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차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보상금액을 농협젓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젓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젓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평가대상 젓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 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차발생분)
  - 지급기준: 젓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

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이 350kg 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kg 적용
  - kg당 가격=(35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35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다만, 송아지 산지가격이 350kg 산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350kg 상한가격은 송아지 산지가격으로 설정
- 나. 350kg 초과~600kg이하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350kg 산지가격)÷250
- 다. 600kg 초과
- 600kg 산지가격÷600kg

##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별표 2

###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 제2항 관련)

####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 가축중 젓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

외한다.

#####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계재(홈페이지)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계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다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	비고
젖소	송아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산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기타	200,000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4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300~499kg 이하(암·수)	200,000	
	299kg 이하(암·수)	300,000	
돼지	모돈	150,000	
	웁돈	150,000	
소·종축·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40%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 산란용종계 • 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 1/4×10%) • 초생추~27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 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10%) • 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 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중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 1/2×10%) • 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 기준. (산란·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 종계노계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노계) 기준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육협회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육협회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한다.  
 ※종계·산란실용계·홍오리·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 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축산법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3조 관련)**

**1. 상한액**

-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지원 기준액】

호당 지원액(6월분)	축종	살처분 두수(두)						
		한우우	젓 소	돼 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50두이상	30두이상	500두이상 (50두이상)	80두이상	40두이상	20두이상	80두이상	
상한액의 80%	40~49	24~29	400~499 (40~49)	64~79	32~39	16~19	64~79	
상한액의 60%	30~39	18~23	300~399 (30~39)	48~63	24~31	12~15	48~63	
상한액의 40%	20~29	12~17	200~299 (20~29)	32~47	16~23	8~11	32~47	
상한액의 20%	5~19	6~11	50~199 (5~19)	10~31	8~15	4~7	10~31	
상한액의 10%	5두미만	6두미만	50두미만 (1~4)	10두미만	8두미만	4두미만	10두미만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10%)는 사육두수 감안 조정

※돼지의 ( ) 내는 모든 사육농장의 경우 적용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입식준비기간: 젓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종계 및 산란계(오리포함) 6개월, 육계 3개월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닭】**

살처분 두수	100~ 499수	500~1 천수미만	1천~3 천수미만	3천~5 천수미만	5천~7 천수미만	7천~1 만수미만	1만~1.5만 수 미만	1.5만~2만수 미만	2만수 이상
산란계 및 증계	상한액의 5%	상한액의 1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80%	상한액	상한액	상한액
육계	상한액의 2.5%	상한액의 5%	상한액의 1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3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50%	상한액의 80%	상한액

※1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적용 (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산정)

**【메추리】**

살처분 마리수	400~4천수 미만	4천~12천 수미만	12천~20천 수미만	20천~28천수미만	28천~4만 수미만	4만수 이상
지원금액	상한액의 10%	상한액의 2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80%	상한액

※4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卵)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 · 오리 · 메추리 소유자